

92조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
제23조의 조문이기 때문에 참고해
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상으로 계
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○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.

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부탁드립니다.
○ 전문위원 민귀식 충청북도공유
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
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.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2년 1월 8일

나. 회부일자 : 1992년 1월 10일

3. 제안이유

- 내부부로부터 시·도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준칙에 시달되어 충청북도
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여 도유재산 대부료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.

4. 주요골자

-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2(대부료등에 관한 특례)신설
-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이상 점유하거나 사용·수익하는 경우에
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년간 대료(사용료, 변상금)을 포함하다.
이 조에서 以下같다.)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년간 대
부료보다 10%이상 증가한 때에는 해당년도의 대부료 인상을은 제23조
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.

増 加 率	貸付料引上率
10%以上 20%未満	10% + (増加率 - 10%) × 0.3
20%以上 50%未満	13% + (増加率 - 20%) × 0.1
50%以上 100%未満	16% + (増加率 - 50%) × 0.06
100%以上 200%未満	19% + (増加率 - 100%) × 0.03
200%以上 500%未満	22% + (増加率 - 200%) × 0.01
500%以上	25% + (増加率 - 500%) × 0.005

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를 검토한바,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·수익하는 경우에 년간 대부료를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년간 대부료보다 10% 이상 증가한 때에는 도유재산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2를 신설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<p>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</p> <p>○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.</p> <p>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질의없음)</p> <p>질의없으세요? 없으십니까?</p> <p>(“없습니다”하는 위원 있음)</p> <p>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공유재</p>	<p>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된 것을 선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오늘 92년에 들어와 처음 개최되는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진지한 심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</p> <p>이상으로 제75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마치겠습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14시 38분 산회)</p>
---	--